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3
----------	-----

발의연월일 : 2013. 9. 16.

발의의원 :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등 찬성의원 8인)

##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지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군 관련부서 공무원

④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부서담당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6]

## 서 명 날 인 서

의원명	서명	날인
채명지	채명지	
김길수	김길수	